

## 발의안 제1호

### 문화 이용 프로그램을 위한 판매세

킹카운티 의회가 문화 이용 프로그램의 설립과 기금을 위한 조례 제18513호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킹카운티 전역에 예술, 과학 그리고 문화유산프로그램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의 문화교육과 공립학교 학생들의 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운송시설 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문화 단체들이 다양한 시민들과 문화 시설이 많이 미치지 않은 곳까지 프로그램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카운티 판매세를 2018년 1월 1일부터 7년간 일 퍼센트의 십 분의 일 인상하여 행정 관리 비용을 포함한 문화 이용 프로그램 기금을 조성하는 이 발의안을:

승인합니다

거부합니다

## 설명 진술

발의안 제 1호가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될 경우, RCW 제 36.160조에 승인된 문화 추진 프로그램의 후원 자금을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칠 년 동안 카운티 판매세의 일 퍼센트의 십 분의 일이 증세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문화 단체들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적, 지역적, 그리고 공립학교들의 추진 프로그램들이 예술, 과학, 그리고 유산 보호 편성에 있어 강화 및 확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단체들은 의무적으로 무료 및 저비용 입학 및 계획 편성 등 다양한 공공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대형 문화 단체들 또한 본 프로그램 자금의 30%를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도시 외 문화 단체들이 주로 위치한 지역사회에 접촉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적 대형 문화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 자금 중 20%를 예술, 과학, 그리고 문화교육 활동에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여 공립학교들에 제공하게 합니다. 공립학교 추진 프로그램들은 또한 각 시설 및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 제공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판매세 수익은 또한 창업 자금, 카운티의 행정 비용,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문화 발전 부서의 자금으로도 운용될 것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자문 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자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에 대한 지침, 적격성, 그리고 보고 요건들이 규정되고 유지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행정원은 해당 프로그램, 관련 재정, 수혜 인원수, 그리고 자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실적을 매년 카운티 의회에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에 관한 문의 연락처:

Leah Krekel-Zoppi, 수석입법분석가  
206-477-0892  
leah.krekel-zoppi@kingcounty.gov

이 법안 전체 내용은 5페이지 부터 시작 합니다.

## 찬성 진술

예술, 과학 및 유산 교육 실습은 아동의 성공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과학 및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공공 자금은 절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발의안 제 1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 1호는 저소득 학교를 우선으로 하여, 전 학구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내 예술, 과학 및 유산 교육 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의안 제 1호는 모든 학구에 무료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비행 박물관(Museum of Flight), 태평양 과학 센터(Pacific Science Center), 시애틀 심포니(Seattle Symphony) 등과 같은 지역 내 세계적인 시설로의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많은 가족들은 라이브 공연이나 박물관 입장권을 구매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발의안 제 1호는 고정된 예산으로 사는 노인들, 장애인,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을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지역의 예술, 과학 및 유산 시설을 누릴 수 있는 무료, 또는 할인된 입장권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울러 발의안 제 1호는 카운티 내에 수백 개의 소규모 지역사회 기구들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더욱 큰 기구들에는 지역 범위의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요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혜택을 받아 오지 못한 지역사회 내 기구들은 비례적으로 증가한 자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 1호는 매년 가정당 평균 30달러만으로 어린이들과 가정에 형평성을 개선하고 중요한 예술, 과학, 그리고 유산 체험에 접근성을 확대해 줄 것입니다. 찬성투표를 부탁드립니다!

제출자: Bill Nye, Estela Ortega, Tom Skerritt  
info@accessforallwa.org

## 반대 진술

우리 양쪽 모두는 예술 및 문화를 지원해 온 오랜 전래가 있지만, 이미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는 킹카운티 납세자들에게 5억 달러의 비례적 판매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며 불공평합니다.

보수파와 급진파는 모두 세금 공정성과 더 나은 우선사항들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러한 비례 증세는 저소득 및 노동자 계급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시민들은 10%를 초과하는 판매세로 이끈 사운드 트랜짓(Sound Transit)의 증세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 도로, 노숙자, 그리고 교육과 같은 우선 사항 부문에 대한 자금 조달력을 붕괴시킵니다. 지금도 다리 밑에서 노숙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째서 5억 달러를 예술에 먼저 투자해야 할까요?

미사여구와는 달리, 여러분의 동동치는 결국 부유한 후원자들을 거느리고 원활한 자금 조달을 받는 대규모 단체들의 보조금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학교와 저소득 계층 및 다양한 공동체를 위한 기금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기관들이 받는 기금에 비교하면 부끄러운 정도입니다.

우리가 선출한 적 없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책임감 없이 십억 달러 절반의 세금을 주무르게 될 것입니다.

킹카운티의 예술 공동체는 이미 많은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술 정책에 대해서는 1% 보장되는 부분이 있으며, 2021년부터는 매년 예술 및 문화 전용 숙박세로 1,300만 달러가 제공될 것입니다.

시애틀(Seattle) 민주당원이자 동(East) 킹카운티의 공화당원으로서, 저희는 여러분께 반대투표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우선순위에 기반을 둔, 잘못된 세금입니다.

제출자: Larry Gossett, Dino Rossi

## 반대 진술에 대한 반증

“다음 세대의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그리고 예술가들은 종래 교실 교육에는 누락된 실습교육에 평등한 접근을 제공받아야 마땅합니다. 빈곤층 학교에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어린이에게 성취의 격차를 좁히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공평한 일이자 시급한 일입니다. 발의안 제 1호는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사회들과 카운티 전역의 수백 개에 이르는 다양한 소규모 기구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작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찬성투표를 해 주세요!” - 전 킹카운티 최고 행정관 및 HUD 부책임자 Ron Sims

## 찬성 진술에 대한 반증

강력한 지역사회를 위해 생기 있는 예술과 문화 단체는 중요하다는 점에 우리는 동의하고, 현재 킹카운티에 있는 견고한 단체들을 자랑스럽게 지지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금은, 특히 영업세와 같이 비례세로부터 확보되는 세금이라면, 주택, 교통 혼잡 완화 및 복지 서비스 같은 먼저 우선시 되는 부문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우선사항에 기반을 둔, 잘못된 세금입니다. 반대투표를 부탁드립니다!

발의안 제1호

재산세 추가부담금 -규제 해제

동 피어스 (Pierce) 소방 및 구조 (“지역구”) 위원회에서 지역구 일반 재산세 추가부담금 인상에 관한 결의안 제820호를 채택하였습니다. 소방 및 응급의료 서비스의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발의안 제1호는 지역구의 일반 재산세 추가 부담금을 2018년 부동산 감정 가격 \$1,000당 \$1.50을 징수하는 것을 복원시키며, 다음 삼 년간 제한 인상률을 6%로 제한하고, 결의안 제820호에 규정되어있는 모든 내용과 같이, 2021년 추가부담금은 차후 추가 부담금 제한율 연산에 적용합니다.

이 발의안 제1호를:

승인합니다

거부합니다

설명 진술

동 피어스(Pierce) 소방 및 구조는 2017년 8월 1일 투표안으로 4년 응급 서비스 추가 부담금 한계 폐지 발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발의안은 현재의 화재 진압, 구조, 그리고 화재 예방 업무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긴급 의료단 한 팀을 더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감정 가격 \$1,000 당 \$1.50달러의 부동산세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며 이 금액은 향후 3년 동안 매년 최대 6%까지 증가시키는 계획을 재승인하게 됩니다.

이 발의안은 어느 경우든 전년 대비 연 1%를 초과하는 수입 증가에 대해 유권자들의 승인을 요구하는 특정 세법을 준수합니다. 이전에 유권자들은 부동산세 추가 부담금을 \$1.50를 승인했으며, 이 발의안은 이 승인된 금액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4년째 되는 해에 부과되는 달러 금액은 향후 1%의 증가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 금액을 설정하는 데 이용될 것입니다.

본 발의안이 승인된다면 우리 소방 지구에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 발의안이 부결된다면 예상하는 세수에서 첫째에만 대략 \$1,768,000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우리 소방 지구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관한 문의 연락처:  
Bud Backer, 소방서장  
253-863-1800  
bbacker@eastpiercefirer.org

찬성 진술

제출자: David Mataftin, Bill Sandlian  
dmviamail@gmail.com

동 피어스(Pierce) 소방 및 구조는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소방서 운영 자금을 지속해서 조달할 수 있도록 발의안 제1호에 찬성투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현재 주에서 제한하고 있는 1,000당 평균 \$1.50의 소방세 부과율을 재승인하는 것입니다. 현행 부과율은 1,000당 약 \$1.38달러입니다. 이 11.5센트는 \$300,000주택의 경우 현재 가치 기준으로 연간 \$34.50가 증가하거나 매월 \$ 2.88가 증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동 피어스 소방 및 구조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 응당한 도움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찬성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진술

제출된 진술이 없습니다.

투표 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진술은 관할권에 의해 임명도니 위원회에 의해 제출됩니다. 위원회를 대표하거나 반대 진술을 하기 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회에 참가하고 싶으시면 관할구역에 연락 하십시오.

이 법안의 전체 내용은 요청에 따라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2호

추가부담금 규제 해제-EMS 추가부담금

동 피어스 (Pierce) 소방 및 구조 (“지역구”) 위원회에서 지역구 응급의료서비스 추가부담금 인상에 관한 결의안 제821호를 채택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서비스의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발의안 제2호는 지역구의 일반 재산세 추가 부담금을 2018년 부동산 감정 가격 \$1,000당 \$0.50을 징수하는 것을 복원시키며, 다음 삼 년간 제한 인상률을 6%로 제한하고, 결의안 제821호에 규정되어있는 모든 내용과 같이, 2021년 추가부담금은 차후 추가 부담금 제한을 연산에 적용합니다.

이 발의안 제2호를:

승인합니다

거부합니다

설명 진술

이스트 피어스(East Pierce) 소방 및 구조는 2017년 8월 1일 투표안으로 4년 응급 의료 서비스(EMS)에 대한 추가 부담금 한계 폐지 발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발의안은 EMS관련 재산세 추가 부담금 비율을 감정가격 1,000달러당 0.50달러로 재승인하고, 더불어 이 비율을 향후 3년 동안 매년 최대 6% 까지 증가시키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응급 의료 전문가 및 요원들로 구성된 응급 치료 차량을 운영 및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것입니다. 4년째 해 추가 부담금의 달러금액은, 향후 1%의 비율 증가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 금액을 설정하는 데 이용될 것입니다.

이 발의안은 어느 경우든 연 1%를 초과하는 수입 증가에 대해 유권자들의 승인을 요구하는 특정 세법을 준수합니다. 2005년, 2011년, 그리고 2016년 유권자들은 EMS 세금 추가 부담금 비율을 감정가격1,000달러당 0.50달러로 인가함으로써 한계치를 재설정했습니다.

이 발의안이 승인되면 EMS 세금 추가 부담금 비율이 감정가격1,000달러당 0.50달러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 지구가 우리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 발의안이 거부된다면, 예상된 세수에서 약 158,0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관한 문의 연락처:

Bud Backer, 소방서장

253-863-1800

bbacker@eastpiercefirere.org

이 법안의 전체 내용은 요청에 따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찬성 진술

이것은 새로운 세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기존에 승인하신 감정가격 1,000달러당 0.50달러의 응급 의료 서비스(EMS) 추가 부담금 비율을 향후 4년을 위해 재승인하는 것입니다.

EMS 추가 부담금에 대한 여러분의 성원은 저희 지역구가 긴급 의료원을 증원하고 모든 담당 인력을 완벽하게 갖춘 고급 구조 지원(Advanced Life Support, ALS)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동 피어스(Pierce) 소방 및 구조 주민들은 별도의 개인 부담 비용 없이 의료팀이 병원으로 이송해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전의 EMS 추가 부담금으로 승인하신 최고의 응급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찬성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 David Mataftin, Bill Sandlian  
dmviamail@gmail.com

반대 진술

제출된 진술이 없습니다.

투표 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진술은 관할권에 의해 임명도니 위원회에 의해 제출됩니다. 위원회를 대표하거나 반대 진술을 하기 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회에 참가하고 싶으시면 관할구역에 연락 하십시오.

## 발의안 제1호

메이플 밸리 (Maple Valley) 소방 및 생명 안전 (킹카운티 소방 보호 제43지구)에서 육 년 동안 해마다 운영예산의 육십 퍼센트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서비스 사용을 위한 요금을 부과하고, RCW52.16.160에 의거하여 다른 재산세의 추가 도입을 금하는 것을 재가해야겠습니까?

네  
아니오

이 법안의 전체 내용은 요청에 따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찬성 진술

제출자: Sean P. Kelly, Chris Bodlovic

메이플 밸리(Maple Valley) 소방부는 시민 운영위원회(Citizens Steering Committee)가 제시하고 소방 위원회가 지원하는 권고사항에 근거하여 비상 서비스 자금 확보에 장기적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소방 혜택 요금(Fire Benefit Charge, FBC)을 이용하면, 재산세 징수 요율은 감정 가격 1,000달러당 1.50달러에서 1.00달러로 낮아집니다. FBC는 이 재산세 0.50달러를 소방 위험 기반 요금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변동이 심한 자산 가치에 전적 기준을 두며 소방부가 향후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할 서비스를 계획하는 능력을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현 체계에 비해 이것은 더 형평적인 방법입니다. FBC는 킹카운티 세무 사정인(King County Assessors) 기준 400제곱피트를 초과하는 개조물 또는 건축물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청구됩니다. 메이플 밸리(Maple Valley) 소방 및 생명 안전은 자체적인 자산 평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금은 화재 위험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떠한 건축물도 없는 미개발 토지는 재산세가 1.50달러에서 1.00달러로 낮아지며 어떤 FBC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와 감시 장치를 사용하는 건축물은 FBC를 10% 할인받습니다. 노인,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 가정은 현재 제공되는 모든 면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 반대 진술에 대한 반증

소방 위원들은 RCW 52.14.010에 따라 각자의 지역구로부터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 금액은 재정 관리 사무소 및 시민을 대표해 선출된 위원들에 의해 책정됩니다.

FBC는 주택과 그에 붙어있는 차고의 제곱피트에 대해서만 부과할 것입니다.

FBC는 별채, 이동식 주택 터, 캠핑 공간, 창고 및 매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메이플 밸리(Maple Valley) 소방서는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뱅크 용량(banked capacity)’을 징수하지도 않습니다.

노인 및 스프링클러 할인도 인정됩니다.

## 설명 진술

메이플 밸리(Maple Valley) 소방 및 생명 안전은 소방 지구 운영 자금 조달 및 유지를 위한 혜택 요금 부과를 허용하는 RCW 52.18에 따라, 2017년 8월 1일 투표안으로 ‘혜택 요금’ 발의안을 제시했습니다. 혜택 요금은 세금이 아니며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발의안이 승인될 경우, 혜택 요금은 2018년부터 육 년 동안 유효하며, 모든 유형 자산의 평방피트와 화재 발생률을 기준으로 한 일관적인 업계 인용 방식에 따라 적용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지역구는 서비스 유지에 충분한 수입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인 세율 및 초과 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동안 평균 세율은 감정 가격 1,000달러당 약 1.69달러였습니다. 혜택 요금안이 승인될 경우, 재산세 세율은 1,000달러당 1.00달러로 제한됩니다. 혜택 요금은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수입을 제공할 것이며, 부동산세보다 더 공정하고 논리적인 기준에 의할 것입니다. 혜택 요금은 운영 예산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발의안이 승인되면 요금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동시에, 우리 지역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현 수준도 향상될 것입니다.

이 법안에 관한 문의 연락처:  
Aaron Tyerman, 소방서장  
425-433-2127  
fbc@maplevalleyfire.org

## 반대 진술

제출자: Eric Bernard, Karen Bernard,  
[http://nofirebenefitchargescheme.typepad.com/no\\_fire\\_benefit\\_charge\\_sc](http://nofirebenefitchargescheme.typepad.com/no_fire_benefit_charge_sc)

사실: 부끄러운 이해 상충. 예: MVF 소방국장들은 각자 근무하는 지역구로부터 보수를 받습니다. 이들에 의해 여러분들이 내는 매년 FBC 금액이 결정됩니다. FBC는 1-747을 우회합니다!

사실: FBC는 여러분의 주택, 매장, 창고, 창고, 닭장 등의 평방 피트에 따라 매겨지는 불공정한 세금입니다. 가치나 용도에 관계없이 매겨집니다. 예: 별채들은 의료 지원처로 기어질 수 없으므로 FBC가 부과되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은 그저 약간의 세금을 FBC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메이플 밸리(Maple Valley) FD 43은 뱅크드 커패시티(banked capacity)를 통해 350만 달러가 넘는 두 배의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합법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주택과 별채가 통합되어 매년 어마어마한 대저택 규모의 FBC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실: FBC는 여러분의 자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 켄트(Kent)의 RFA는 이동식 주택 터 및 캠핑 공간에 대해 FBC를 부과합니다.

사실: 각 건물당 FBC 한도는 없습니다. 예: 현재 매장 또는 창고 비용은 연간 15달러지만, FBC는 600달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40배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FBC 계약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재정 수입을 원하거나, 아니면 그저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사실: FBC는 노인들에게도 집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사실: 호바트(Hobart) - 라벤스데일(Ravensdale) - 메이플 밸리(Maple Valley) - 이 지역 여러분은 지난해에 이 계약을 무너뜨렸습니다.

발의안 제 1호에 반대투표를 해 주십시오!

## 찬성 진술에 대한 반증

FBC 계약은 연간 예산 증가를 0명의 유권자 승인으로 허용케 합니다!

FBC는 KC 세무 사정인(KC Assessor)의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기록들에는 많은 정보가 누락되 있음으로 이에 근거하여 요금을 책정하기에는 매우 빈약한 출처가 됩니다.

주택에 대한 FBC 부과율을 오래된 창고/창고/닭장에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FBC는 소방서나 소방차를 위해 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빈곤층 노인들만 FBC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FBC 계획은 MV 가족 농장들이 문을 닫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 조례 제18513호전문

본 조례는 문화 단체들을 지원하는 킹카운티 Access for All 프로그램을 입안하여 유권자 승인 하에 매출 및 사용세에 일 퍼센트의 십 분의 일을 도입하여 킹카운티 Access for All 프로그램 자금을 지원, 2017년 8월 1일 시행될 킹카운티 특별선거에서 킹카운티 유권자들에게 본 조례의 매출 및 사용세 도입 승인 여부를 묻는 발의안을 제출하고, 또한 조례 14482, 7절을, 수정에 의거하여 K.C.C. 2.49.060에 따라 개정한다.

사실 진술:

1. 워싱턴 주 입법부는 2015년 워싱턴주 법 (Laws of Washington 2015) 24장에서 공공 및 교육 혜택과 경제적 지원을 예술, 과학, 그리고 문화유산 단체들을 위해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2. 킹카운티 의회는 Motion 14082와 Motion 14299를 통해 만장일치로 예술과 과학, 그리고 문화유산 단체들에 공공 및 교육 혜택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3. 예술, 과학, 그리고 문화유산 비영리 단체들에게 지원되는 공적자금 증액으로 대중들을 위한 단체들의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해지고 향상된 대중 공공 프로그램들로 킹카운티 주민들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킹카운티 예술, 과학, 그리고 문화유산 단체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증가는 공익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다양한 공공 목적에 부합한 역할을 할 것이다.

a. 예술, 과학, 그리고 문화유산 단체들이 제공하는 교육적 범위와 제공물을 강화하고 확장함으로써 모든 킹카운티 주민에게 개인의 창의성을 탐험하고 지역의 역사를 배우며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민의 참여를 이끄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b. 킹카운티 전 19개 교육청에 속한 K-12 공립학교 학생들은 예술과 과학, 그리고 문화유산 단체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교실내 심화학습과 문화적 명소 무료 방문 기회들로 수업 참여도와 졸업률을 향상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c. 예술, 과학, 그리고 문화유산 단체들의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경제적 및 지리적으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까지 지속 및 확대되도록 하고, 킹카운티의 모든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포용하는 지역사회로 이끈다.

5. Access for All 기금은 예술, 과학, 그리고 문화유산 단체들을 경제적으로 건전하게 만들 것이며 공공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6. 본 조례에 정의된 Access for All 프로그램은 킹카운티 전역의 대중을 위해 활동을 제공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수백 곳의 예술, 과학, 그리고 문화유산 단체들을 지원하고, 학생과 성인, 경제적, 지리적으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공익의 목적과 효용성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7. 2016년, 4Culture는 규모와 분야, 지리적 위치가 다양하며 다양한 관점을 가진 단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연구단 회의를 소집하여 Access for All 프로그램의 구현과 운영을 위한 권고 사항들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8. 연구단이 제시한 권고 요점은 평등과 포용성, 접근성이 Access for All을 이끄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 이러한 원칙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사의 권고는 다음과 같다.

a. 예술, 과학, 그리고 문화유산 단체들 공용에 있어 과거와 현재 존재하는 불평등함은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다뤄져야 하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자리한 문화 단체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평등한 공용을 제공한다.

b. Access for All이 지원하는 단체는 사회사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c. 지역 사회 내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전통적 사회 서비스 단체는, 단체의 목적이 꼭 예술, 과학, 문화유산이 아니라도 프로젝트별 기금을 받아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한다.

d. 교실과 다른 지역사회 시설에서 예술, 과학, 그리고 문화유산 단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답사와 문화 교육을 늘리고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e. Access for All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섬기는 사회사의 인구 통계를 직원 구성과 이사회, 회원, 대상 및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f. Access for All은 대중을 상대로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9. Access for All 기금은 예술, 과학, 그리고 문화유산 단체들의 개방 시간을 확대하고 할인 및 무료입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장학금과 공립학교 이용 프로그램 참여를 이끌고 문화 활동 시설이 없는 사회사에 시설을 구축 및 확대할 수 있게 한다.

10. Access for All 기금은 킹카운티 전역에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예술, 과학, 그리고 문화유산 단체 접근성을 촉진할 것이며 카운티의 상당수 주민이 직면한 접근성의 장벽을 제거하도록 한다.

11. Access for All 기금은 킹카운티 전역에서 새로운 문화 단체의 생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리적 장벽을 낮출 것이며 모든 주민이 예술과 과학, 그리고 문화유산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한다.

12. Access for All 기금은 킹카운티 전역에서 예술, 과학, 그리고 문화유산 센터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역동적인 지역사회를 육성한다.

킹카운티 의회에 의해 제정:

1절. 결정 사항. 의회는 본 조례가 제안하는 예술, 과학, 그리고 문화유산 단체 지원 프로그램에 지출되는 공공 기금이, 사회의 상당 부분에 합당하고 일반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주로 공익을 위한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워싱턴주 헌법(Washington State Constitution) Article VII, 1절의 공공 목적에 부합한다 판단하고 이같이 선언한다.

2절. 정의. 본 절에 명시된 정의들은, 문맥 상 확실히 다른 의미 부여가 없는 이상, 본 조례 전체에 적용된다.

A. “Access for All”은 본 조례에 의해 문화적 단체들의 교육적 범위와 제공물의 강화 및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문화 단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확대하여 문화 단체들에 금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 효용을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을 뜻한다.

B. “Access for All 기금”은 본 조례에서 정한 목적만을 위해 조성되고 이용되는 카운티 기금을 뜻한다.

C. “행정 비용”은 Access for All 프로그램과 관련된 카운티와 4Culture의 모든 운영, 행정, 유지 비용을 뜻한다.

D.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단체”란, 지방 문화 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대 규정할 수 있는 문화 단체를 뜻한다.

E. “지역사회 문화유산 단체”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단체로 주 목적은 인류학, 전통, 자연사의 발전과 보존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를 뜻한다.

1. 지방 문화단체의 본부가 위치하지 않은 지역구에서 주로 지역사회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2. 본부가 킹카운티 내에 위치하며 주된 목적이 헛간, 별채 건물, 농업 관련 지역사회 공간의 보존에 해당하는 단체

F. “문화적 중심”은 문화 단체와 시설이 집결된 지역, 주변과 그 외 사회사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문화 활동을 제공하는 지리적 장소를 뜻하며, 본 조례의 9.B절에 규정된 하위지역 투자 계획 대상으로 확인된 곳에 해당한다.

G. “문화 단체”는 워싱턴 (Washington) 주 법에 따라 설립되고 1986년 국내 법규(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501(c)(3)에 명시된 바에 따라 국내청(Internal Revenue Service)의 인가를 받은, 본거지와 주된 활동 장소가 카운티 내에 있는 굳건한 상태의 비영리 법인을 뜻한다. 단, 주기관 또는 그 하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여러 문화 단체에 재분배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단체,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 케이블 통신 시스템, 인터넷 기반 통신 벤처나 서비스, 신문 또는 잡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체의 주목적은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과 보존, 시각 예술이나 공연 예술, 동물학, 식물학, 인류학, 전통사나 자연사에 해당해야 하며 모든 단체는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경험을 직접 제공해야 한다. 동물원이나 수족관과 같은 동물학의 발전과 보호가 주목적에 해당되는 모든 단체는 동물원 수족관 협회나 그 승계기관에서 승인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러한 시설을 지원해야 한다.

H. “평등 포용의 공익”은 본 조례의 4.A.2에 정의된 평등 포용의 공익을 뜻한다.

I. “재정 후원자”는 본 조례의 조건 및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지침을 준수하여 후원을 받는 사회사에 기반한 문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자금을 받는 사회사에 기반한 문화 단체를 뜻한다.

J. “4Culture”는 K.C.C. 2.49장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업체인 Cultural Development Authority of King County를 뜻한다.

K. “일반 공익”은 본 조례의 4.A.1에 정의된 일반 공익을 뜻한다.

L. “지리적 포용의 공익”은 본 조례의 4.A.3에 정의된 공익을 뜻한다.

M. “비면세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법인”은 사회사에 기반한 문화 단체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1986년 국내 법규(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501(c)(3)에 명시된 바에 의해 국내청(Internal Revenue Service)의 인정은 받지 못한 단체를 뜻한다.

N. “세입금”은 본 조례에 따른 추가적인 판매세 및 사용세, 그에 따른 이자로 조성된 수익금을 뜻한다.

O. “프로그램”은 Access for All 프로그램을 뜻한다.

P. “공익”은 본 조례 4절에 명시된 평등과 지리적 포용 공익, 일반 공익으로 구성된 식별 가능한 공익을 뜻한다.

## 조례제18513호전문

Q. “지방 문화 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 단체를 뜻한다.

1. 광범위한 편익을 제공하며 대중이 넓게 참여하는 문화 시설을 보유, 운영 또는 지원하거나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 체험이나 오락 활동을 제공하는 단체
2. 워싱턴 (Washington) 주 법률에 따라 비영리 법인으로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며 최근 3년 이상 프로그램 자금을 할당받은 단체
3. 카운티 내에 본거지를 두고 주로 카운티 내에서 카운티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을 제공하는 단체
4. 파산을 선언하지 않은, 최근 이 년 이내에 육 개월 이상 운영 중단 또는 상당한 운영 규모 축소를 하지 않은 단체
5. 프로그램 자금이 할당되는 해로부터 지난 삼 년 동안 다음 전체 둘 중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 :

a. RCW 36.160장에 따라 최소 삼 백만 달러로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게 조정된 최소 연평균 소득을 갖추고 있는 단체

b. RCW 36.160장에 따라 최소 일백 이십 오만 달러로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게 조정된 연평균 소득을 갖추고 연간 참여자 수가 최소 오만 명인 단체; 그리고

6.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며 상당한 공익을 제공하고 연간 회계 감사와 참여자 수 인증을 통해 단체의 상태를 증명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단체

R. “자격을 갖춘 비전통적/사회적 서비스 및 문화 기관”은 워싱턴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기구로서 카운티 내에 본거지를 두고 대부분의 활동을 수행하며 자원의 상당 부분을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과 보존, 시각 예술이나 공연 예술, 동물학, 식물학, 인류학, 전통 또는 자연사에 투입하고 일반 대중에게 직접 프로그램이나 체험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단, 주기관 또는 그 하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여러 문화 단체에 재분배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단체,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 케이블 통신 시스템, 인터넷 기반 통신 벤처나 서비스, 신문 또는 잡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S. “과학”은 과학 또는 기술을 포함한다.

T. “후원을 받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법인”은 특정 문화 프로젝트에서 재정 후원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 조례와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지침에 따라 공익을 제공하는 비면세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법인이나 자격을 갖춘 비전통적/사회적 서비스 및 문화 기관을 뜻한다.

U. “스타트업 기금”은 본 조례의 효력일 이후 세금 징수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기금의 상환을 예상하고 카운티에서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법무 비용, 경상비, 선거비 등을 포함한 행정비를 뜻한다.

### 3절. Access for All 프로그램.

A. 카운티는 본 조례에 따라 Access for All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Access for All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 시설의 교통수단 마련 등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문화 단체 시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단체의 제공물을 확대, 공립학교 학생의 문화 교육 접근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는 공립학교 접근 프로그램

2. 매년 지방 문화 단체에 수익금을 제공하는 지방 문화 단체 접근 프로그램은:

- a. 특별히 본 조례 4절에 명시된 공익의 범위에서 포착할 수 있는 공익을 제공한다,
- b. 매년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형평성 포용 공익과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지리적 포용 공익을 제공한다,
- c. RCW 36.160장의 요건을 충족함,
- d. 지방 관객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함,

3.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단체 접근 프로그램은, 매년 경쟁 절차를 통해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포착되는 공익을 제공하고, 지방 문화 단체 접근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역사회 단체들에 수익금을 제공함

B.1. 카운티는 K.C.C. 2.48 및 2.49장을 통해 4Culture가 카운티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이행, 관리하도록 승인하였다. 따라서 RCW 36.160.070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카운티는 프로그램의 관리를 4Culture와 통합하여 본 조례 및 본 조례 9 절에서 제시한 이행 계획에 따라 RCW 36.160.110에서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카운티는 4Culture를 RCW 36.160 장과 본 조례의 9절에서 규정한 이행 계획에 따라 Access for All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임명한다. 카운티가 K.C.C. 2.49.140에 따라 4Culture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카운티가 지정 공공기관이 되어 4Culture가 본 조례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를 대행한다.

3. 자격, 보고 요건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지침은 수익금을 받는

문화 단체로 포착 가능한 공익을 제공 또는 지속해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프로그램 보조금 계약은 Access for All 재정 지원을 받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카운티의 그 누구도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 국적, 종교, 장애, 성적 지향성, 성적 정체성, 표현이나 연령을 이유로 혜택이 거부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4Culture가 개발 및 관리하는 지침과 프로그램 보조금 계약은 본 조례의 9.B 절에 명시된 형평성 및 하위지역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4Culture는 본 조례의 9.B.4 절에 명시된 방식으로 형평성 및 하위지역 계획을 이용해야 한다.

4. 이행 계획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4Culture는 요청을 받을 경우 경쟁적 자금 지원 신청 능력이 제한된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단체에 전문성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5.a. 4Culture는 매년 카운티 집행부와 카운티 위원회에 프로그램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2019년 3월 31일부터 프로그램이 자금 지원을 받는 매해마다 집행부는 종이 원본과 전자 사본으로 카운티 서기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기관은 원본을 보관하고 전자 사본을 의원들과 의회 비서실장, 위원회 총 책임자 및 그 후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b. 이 보고서는 본 절의 하단부분 A에 포함된 각 프로그램 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카운티 의회 지역구 총액을 포함한 카운티 세입금 분배에 대한 재무보고서

(2) 각 카운티 의회 지역구에서 Access for All 지원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받은 사람 수에 대한 보고

(3) 본 절의 하단부분 B.5.a에 규정된 전년도 연례 보고서에서 예상한 자금 지원을 받은 각 지방 문화 단체의 포착 가능한 공익 제공 성과 보고서

(4) 자금 지원을 받은 각 지방 문화 단체의 다음 연도 공익 제공 계획에 대한 예상 보고서

(5) 자금 지원을 받은 각 지방 문화 단체의 공립학교 문화 접근 프로그램 참여, 하단부분 B.5.a에 따라 전년도 연례 보고서에서 예상한 참여 목표, 자금 지원을 받은 지방 문화 단체의 다음 연도 공립학교 참여 계획에 대한 성과 보고서

(6) 자금 지원을 받은 각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단체의 포착 가능한 공익 제공 성과 보고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단체 육성, 본 조례 9.B절에서 정한 하위지역 계획에 따른 문화 센터 생성 및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단체 이용 프로그램의 수익금 및 지방 문화 단체 기부금 이용 계획과 실제 이용에 관한 보고서, 마지막 보고서 이후의 프로그램 패럴 절차, 자격 지침, 보고 요건의 변경안에 대한 관리 보고서

6. 4Culture 이사회는 최초 Access for All 프로그램 자문 위원회 역할을 한다. 의회는 채택된 이행 계획에서 상설 자문 위원회의 규모와 운영을 정해야 한다. 상설 자문 위원회의 회원은 채택된 이행 계획에 따라 지명된다.

### 4절. Access for All 프로그램 공익.

A.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모든 문화 단체는 포착 가능한 공익을 제공해야 한다. 지방 문화 단체는 자금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매년 한 번 이상의 형평성 포용 공익과 한 번 이상의 지리적 포용 공익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단체는 자금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매년 한 번 이상의 일반 공익 또는 한 번 이상의 형평성 포용 공익을 제공해야 한다. 다음은 프로그램의 포착 가능한 공익에 해당한다.

1. 일반 공익. 다음과 같은 공익은 “일반 공익”에 해당한다.
  - a. 지역의 문화생활 참여와 예술, 과학, 전통 프로그램의 쉬운 참여 기회를 무료로 카운티 주민 누구에게나 제공
  - b. 지역사회에 기반한 비영리 기구나 비영리 법인과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제공
  - c. 기술적 수단과 기타 수단을 통해 단체의 자체 시설이 위치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
  - d. 단체의 자체 시설과 학교 및 다른 시설에서 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을 제공
  - e. 대중의 배움 및 오락을 위해 문화 프로그램과 공연, 전시를 확대함
  - f. 대중의 이익이 되도록 문화 단체의 범위와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문화 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지님
  - g.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단체의 시설과 지역사회 기반 및 지방 문화 단체의 프로그램에서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접근성 요건을 준수함
  - h. 전통 문화 및 공예에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단체를 지원함
  - i.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단체의 문화 시설을 카운티 및 기타 관할지의 토지 이용 정책 및 개발 규제에 따라 구축하고 확대함

## 조례제18513호전문

- j. 카운티 전역에서 문화 축제를 개최
  - k. 무료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 전후에 전시, 공연, 행사 참여를 독려하여 문화 체험을 증진할 프로그램, 교육 자료를 제공
  - l. 인턴십과 견습,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청소년에게 예술, 과학, 전통 경력 구축 기회를 제공함
  - m. 문화 단체나 다른 문화 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새로운 다분야 문화 경험을 제공함
  - n. 문화 단체 프로그램을 합당한 수준으로, 단체의 지역사회 도달 능력을 높이고, 소통, 홍보 전략을 통해 카운티 주민들의 문화적 체험을 촉진하며,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사회에 중점을 두는 단체 역량 구축 프로젝트나 활동을 이행함
  - o.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단체의 경우, 문화 단체가 합당한 수준으로 단체를 지속하여 의미 있는 공익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음을 (그렇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증명하는 단체 역량 구축 프로젝트나 활동의 이행
2. 자본 포함 공익. 다음 공익은 “자본 포함 공익”입니다.
    - a. 경제 및 기타 접근 장벽 있는 카운티 거주민들을 위한 예술, 과학, 그리고 문화유산 단체 및 시설에 대한 무료, 저비용 참여 제공
    - b. 학교 및 문화 유적지에서 카운티 전체의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 다른 교육 과정 관련 예술, 과학, 그리고 문화유산 프로그램에 대한 무료 접근
    - c.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다양한 인구군과 지역 사회를 위한 시설,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접근 기회 증가, 문화 프로그램 확장, 카운티 내 다양한 인구군의 흥미를 끌 프로그래밍 제공을 위해 다양한 문화 단체 직원 및 관리 위원회 증가
    - d. 카운티의 다양성을 대표하고 반영하는 프로그램 및 단체에 대한 투자 증가
    - e. 문화 프로그램 및 활동 계획과 구현, 또는 문화 단체와의 협력으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인구 조사 표준 지역 및 지역 사회 내 문화 프로그램 범위 및 영향 확대, 본 조례의 9절에서 요구하는 구현 계획에서 추가 정의됩니다.
  3. 지역 포함 공익. 다음 공익은 “지역 포함 공익”입니다.
    - a. 문화 센터에 문화 프로그램 및 활동 계획과 구현;
    - b. 직접적인 투자 또는 현물 지급식 지원을 통해, 본 조례의 9.B.9절에서 요구하는 하위 지역 계획에서 식별된 우선순위 프로젝트 및 계획에 대해 지역 사회 기반 문화 단체와의 협력
  - C. 지역 사회 기반 문화 단체로 공립학교와의 직접적인 제휴 또는 본 조례의 3.B.5.b.절에서 요구하는 연간 보고서에서 식별된 방법을 통해 지역 문화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배치된 도시 외곽에 있는 지역 사회에 문화 프로그래밍 제공
  - d. 4Culture로 수익금을 제공해 본 조례의 7.F.에 따라 무자본 프로젝트나 계획을 위한 지역 사회 기반 문화 단체에 배분.
- B. 자본 및 지역 포함 공익 제공은 다음 자본 및 포함 결과의 달성을 위해 의미 있는 진척을 내기 위함.
    1. 카운티 내 예술, 과학, 그리고 문화유산 단체의 프로그램 및 활동 접근 확장으로 예술, 과학, 그리고 문화유산 경험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경제적, 지역적 불공평의 극복은 방문객과 관객들에게 카운티의 다양성을 나타낸다.
    2. 현지 단체와의 관계 발전 및 개선으로 지역 사회 내,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창출하기 위해 현지 지역사회와 연계.
    3. 지역 문화 단체의 위원회, 직원, 프로그래밍, 멤버십과 관객들이 카운티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더욱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것;
    4. 프로그램이 최소 총 백 만 달러를 매년 각 카운티 위원회 지역구에 있는 지역 사회 기반 문화 단체에 분배하도록 보장; 그리고
    5. 킹카운티 전반에 걸쳐 문화 센터의 개장 및 성장 촉진.
- 5절. 과세 문제, 유권자 승인 조건 설정.
    - A. 본 조례의 3절에서 확인되고 본 조례의 8절에서 승인된 발의안에 투표한 대다수 유권자의 특정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 접근에 필요한 금액을 제공하기 위해, 칠 년 동안 RCW 82.08, 82.12 또는 82.14 장에 정의된 대로 카운티 내에서 모든 과세 가능건에 대해 판매세 및 사용세 일 퍼센트의 십분의 일이 징수, 결정, 부과됩니다. 세금은 판매세 또는 사용세가 RCW 82.08 또는 82.14 장에 따라 거두어진 사람들에게 부과 및 징수되며, 판매세의 경우 판매가 일 퍼센트의 십분의 일이, 사용세의 경우 사용 항목의 가치의 일 퍼센트의 십분의 일이 징수됩니다. 추가 영업 및 사용세는 82.14 RCW장에 따라 카운티에 의해 최근에 부과된 기존의 다른 모든 판매 및 사용세에도 부과됩니다.

- B. 본 절의 하위 A절에서 승인된 추가 판매 및 사용세 부과로 인해 카운티에서 RCW 82.14.410에 포함된 한도 이상의 속박 판매 및 사용세를 추가 부과하는 경우의 판매는 추가 판매 및 사용세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 6절. 세금 수익금의 보존.
    - A. 본 조례의 5절에 따라 부과된 판매 및 사용세 수익금은 모든 자금에 대한 접근에 따라 보존되고 RCW 36.160장과 일관된 목적과 본 조례 9절에 요구되는 구현 계획을 따라 전적으로 사용됩니다.
    - B. 카운티는 본 조례에 언급된 자금 지원과 유사한, 문화 단체에 전례 관습적으로 제공된 자금 지원을, 본 조례로 인해 물질적으로 해제 또는 교체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C. 4Culture 또는 카운티에 대한 스타트업 자금 지원을 제외하고 본 조례의 5절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수익금은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9 절에서 요구하는 구현 계획을 승인할 때까지 배분할 수 없습니다.
  - 7절. 세금 수익금 사용 - 할당.
    - A. 연간 세금 수익금에서 금액은 우선 스타트업 자금 지원의 재지급을 위해 보존됩니다.
      - B. 본 절의 하위 A절에서 요구하는 금액 보존 이후 남은 세금 수익금에서, 연간 이용 가능 총 세금 수익금의 최대 일 과 사분의 일을 카운티 및 4Culture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관리 비용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C.1. 본 절의 하위 A 및 B절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보존한 후 남은 세금 수익금 중 십 퍼센트를 연간 RCW 36.160.100(2)의 대상이 되는 공립학교 접근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학생 교통을 위한 본 프로그램에서 이용 가능한 자금 지원이, 이용 가능한 수익금보다 많은 학생 교통 수요로 인해 일 년 이상 부적합할 경우, 공립학교 문화 접근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비례 할당은 최대 십 이 퍼센트 증가해 적절한 학생 교통 자금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수익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2. 공립학교 접근 프로그램은 지역 및 지역 사회 기반 문화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공립학교 학생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3. 공립학교 접근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은 RCW 36.160.100과 일관되게 우선 순위화됩니다. 실현 가능하며 이용 가능한 자원과 일관되는 범위까지 이익이 카운티 내 모든 공립학교로 제공됩니다. 공립학교에 제공되는 참여 이익 및 기회는 국립 무료 학교 식사 프로그램 또는 할인가 학교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과 상대적으로 같은 범위를 지녀야 합니다.
          4. 지역 문화 단체는 공립학교 접근 프로그램에 본 절의 하위 D절에 따라 받은 비용의 이 최소 십 퍼센트를 소비해야 하며, 여기에는 학생의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접근비용, 교육 과정 기반 예술, 과학,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로 도입해 학생의 경험을 심화시키는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5. 공립학교 접근 프로그램은 공립학교 학생들이 문화 단체에서 제공하는 연령별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제공합니다. 교통비 지원 후 RCW 36.160.100에 따라, 공립학교 접근 프로그램은 지역구 단위의 문화 교육 계획과 지역구 문화 교육 조정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문화 단체별로 도구, 자료, 매체 개발을 위해 제공하여 학교 접근 프로그램 및 활동이 학교 교육 과정과 일치하게 합니다. 이용 가능 지원금의 대상인 공립학교 접근 프로그램은 또한 예술가, 역사가, 과학자 등 문화 교육 자원의 교사 및 제공자에 대한 교육을 해당 도구, 자료, 매체 발전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프로그램과 활동이 학교 교육 과정과 일치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 D.1. 본 절의 하위 A, B, C절에서 요구하는 금액 확보 이후 남은 세금 수입에서, 프로그램은 연간 칠 십 퍼센트의 수익을 적격 지역 문화 단체에 분배하게 됩니다. 이는 평균 연간 수익 및 평균 연간 출석률의 종합 크기를 통해 모두 삼 년 이상 동안 연간 순위 지정을 하여 이루어지며, 출석률은 수익량의 두배입니다.
              2. 수익금은 순위에 따라 적격 단체에 분배되어야 하며, 높은 순위의 단체는 많은 자금을 지원받지만 어떠한 단체도 삼 년 이상 연간 평균 수익의 십 오 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익금을 받지 않습니다. 수익금은 RCW 36.160.110(2)와 일관되는 지역 문화 단체 접근 프로그램에 따라 문화 단체의 기본 운영 및 문화와 교육 활동, 프로그램과 계획, 공익 및 의사소통 영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각 지역 문화 단체 부문의 최소 이 십 퍼센트를 본 절의 하위 C절에 설명된 대로 공립학교 접근 프로그램 참여 전용으로 돌린다는 요건을 포함합니다. 본 하위 절에 따라 지역 문화 단체에 분배된 수익금은 자본 지출이나 획득은 포함하되 부동산에 대한 개선 구축 또는 획득에 한정되는 않는 자본 지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지역 문화 단체는 자본 포함 공익의 인상분 중 최소 십 오 퍼센트, 지역 포함 공익의 인상분 중 최소 십 오 퍼센트로 확장합니다. 지역 문화 단체는 또한 인상액의 4Culture에게 제공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최소 7.5 퍼센트로, 본 절의 하위 F.절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지역 사회 기반 문화 단체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의 9절에서 요구하는 계획의 구현은 지역 문화 단체가 자본 및 지역 포함 공익 요건을 충족하고 자본 및 포함 결과에 대해 의미있게 진행하는

조례제18513호전문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이는 단체가 정립된 과정 및 관리되는 4Culture를 통해 다른 지역 문화 단체와 함께 총괄적으로 지역 포함 공익의 최소 절반 이상을 투자함으로써 지역 범위를 확장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해당 수익금은 자본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 연간 수익 한도의 십 오 퍼센트 또는 순위 요건 또는 그렇지 않을 경우를 위해 지역 문화 단체에 분배된 수익금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본 절의 하위 A, B, C, D절에서 요구되는 금액 보존 이후 남은 세금 수익금에서, 팔 퍼센트 미만이 연간 모든 프로그램의 접근 관리 비용을 위해 4Culture에 연간 분배됩니다.

F.1. 본 절의 하위 D.3절에 따라 연간 수익 한도의 십 오 퍼센트나 순위 지정 요건 또는 그렇지 않을 경우의 수익금은 문화 센터의 발전 및 지역 사회 기반 문화 단체 분배를 위해 4Culture에 기여하기 때문에 본 절의 하위 A, B, C, D, E절에서 요구하는 금액 보존 이후 남은 세금 수익금에서, 남은 모든 수익금은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경쟁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 기반 문화 단체에 다음과 같이 연간 분배됩니다: 신규 문화 단체의 스타트업 지출 지원을 위해 지역 사회 기반 문화 단체용 종자돈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문화 및 교육 활동, 프로그램과 계획, 공공 이익과 의사소통 영역, 기본 운영, 자본 지출이나 획득, RCW 36.160.110(2)과 일관되고 지역 사회 기반 문화 단체 프로그램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와 합리적으로 관련되거나 필요한 기술과 장비 및 공급품.

2. 본 절에서 하위 F.1절의 사용 수익금은 다음과 같이 경쟁 과정을 통해 연간 분배됩니다.

a. 최소 십 퍼센트의 금액이 새로운 문화 단체 생성과 문화 센터 발전 촉진을 위한 종자돈으로써 분배됩니다.

b. 지역 사회 문화유산 단체에 대한 분배로 이러한 단체에 대한 수익금은 연간 사백 오십만 달러 이상이며, 또는 지역 문화 단체에서 제공하는 해당 단체에 대한 프로그램 및 제휴의 가치를 고려한 적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적격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적격 지역 사회 문화유산 단체에 분배 이후 수익금이 남을 경우, 이러한 자금은 어떠한 지역 문화 단체도 기본 소재지가 없는 위원회 지역구의 지역 사회 내에 있는 지역 사회 기반 문화 단체에 분배되어야 합니다.

c. 남은 수익금은 기타 모든 적격 지역 사회 기반 문화 단체를 위한 운영, 자본 지출, 프로젝트와 역량 강화를 위해 분배됩니다.

d. 지역 문화 단체에 받지 않은 수익금은 자본 지출에 소비할 수 없습니다.

3. 본 프로그램은 본 하위 F절에 따라 분배되며, 각 위원회 지역구의 지역 사회 기반 문화 단체의 해당 프로그램 수익금의 총합은 매년 최소 백만 달러가 됩니다.

G.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서 승인된 특정 활동이나 사용을 위한 후원 지역 사회 기반 문화 법인과 계약은 목적으로 회계 후원사에 수익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회계 후원사가 수익금 사용에 관한 제어 및 재량을 유지하고, 수익금은 개정된 대로 1986년 국제 법규의 501(c)(3)절에 따라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기록을 유지하고, 회계 후원사의 자체 제의를 목적으로 추가된 후원받는 지역 사회 기반 문화 법인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분배를 제한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러한 회계 후원사는 본 조례의 3절에서 확인된 공익 제공을 위해 후원받는 지역 사회 기반 문화 법인의 특정 프로젝트가 제공하거나 지속할 경우 프로그램 비용을 후원받는 지역 사회 기반 문화 법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계 후원사는 특정 프로젝트에 의해 공익의 조례 및 조항에 따라 프로그램 금액이 제공된 후원받는 지역 사회 기반 문화 법인의 특정 프로젝트를 완료할 책임을 지닙니다.

H. 4Culture는 본 조례의 3절에서 확인된 각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적격 지출에 대해 킹카운티에서 승인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합니다. 가이드라인은 36.160 RCW장 및 본 조례와 일관되어야 합니다.

8절. 특별선거 요청. RCW 29A.04.321에 따라, 킹카운티 위원회는 2017년 8월 1일자로 특별선거를 요청해 본 조례에 설명된 목적에 따라 판매 및 사용세 일 퍼센트의 십분의 일을 칠 년 동안 부과 승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킹카운티 선거 임원은 주 헌법 및 일반 법률에 따라 본 조례 발의안에 대해 통지하며 특수 카운티 선거에 따라 카운티의 유자격 선거인에게 제출하게 되며, 발의안이 이후 제시됩니다. 위원회의 직원은 다음 양식에서 킹카운티 선거 임원에 대한 발의안을 인준합니다.

발의안 \_\_\_\_; 카운티 위원회는 문화 접근 프로그램 정립과 자금 지원에 대해 XXXXX 조례를 채택했습니다. 승인될 경우, 본 발의안에서 공립학교 및 문화 단체 접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킹카운티 전반에 걸쳐 학생 및 저소득층에게 예술, 과학, 그리고 문화유산 프로그램에 대한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티켓을 제공하거나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공립학교 학생과 공립학교의 문화 교육에 대한 전용 교통 자금 지원일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2018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7년간 카운티 판매세의 1 퍼센트의 1/10을 인상하여 자금이 지원됩니다. 본 발의안의 승인 여부:

\_\_ 승인

\_\_ 거절

9절. 구현 계획.

투표자들이 판매 및 사용세를 승인할 경우, 프로그램은 카운티 임원에게 Access for All 프로그램 구현 계획을 개발 및 제공합니다. 4Culture와 협의하여 카운티 임원은 구현 계획 및 조례를 전달해 판매 및 사용세 도입을 승인하는 선거 인가 이후 구립일 안에 위원회에 계획을 승인시킵니다. 구현 계획은 조례 승인 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4Culture와 협의하여 임원은 개정 사항을 구현 계획에 제안하며, 이는 프로그램 설명이나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구현 계획의 개정 사항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 사항은 조례 승인 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최초 구현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A.1. 4Culture 또는 카운티에서 발생 또는 발생하는 초기 비용의 항목별 기재.

2. 공립학교 접근 프로그램, 지역 문화 단체 접근 프로그램, 지역 사회 기반 문화 단체 접근 프로그램과 모든 프로그램의 4Culture 관리 체제 등 모든 프로그램의 주요 접근 요소에 대한 상세 프로그램.

3. 공립 학교 접근 프로그램 설명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공립 학교 접근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개요 및 Access for All 프로그램의 해당 부분 내에서의 자금 할당,

b. 지역 설명과 기한, 예상 비용 및 결과를 포함하는 공립학교 접근 프로그램의 학교 교사 교육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

c. 시작 시간,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학구, 학교 교사, 문화 단체의 교육 프로그램과 4Culture에서 공립 학교 접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제공하는 각각의 역할이 포함된 공립 학교 교통 프로그램을 위한 목표, 우선순위 및 과정 설명, 그리고

d. 해당 문화 단체의 교내 및 지역사회 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목표, 우선순위 및 전략 설명.

4. 지역 문화 단체 접근 프로그램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지역 단체 접근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개요 및 Access for All 프로그램에 대해 이 부분 내에서의 자금 할당,

b. 형평성이 포함된 공공혜택을 위해 해당 상의 최소 십 오 퍼센트 및 지리적 요소가 포함된 공공혜택을 위해 해당 상의 최소 십 오 퍼센트를 지출하기 위한 지역 문화 단체의 가이드라인과 상을 이용할 시 지역 문화 단체를 지원하여 형평성과 포함한 계획을 향해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계획,

c. 초기 삼년의 전환 프로그램에 있어 출석 및 수익을 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격 수익 및 출석 보고 시 지역 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출석, 수익 요건 및 자원 설명,

d. 제공된 공공혜택의 지속적인 성과에 대한 기준치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 및 보고서에 대한 설명, 해당 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적당하도록 지역 문화 단체가 제공해야 하는 형평성 및 지리적 요소가 포함된 공공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설명 및 RCW 36.160.090과 본 조례에 따라 식별 가능한 형평성 및 지리적 요소가 포함된 공공혜택과 일반적인 공공혜택에 대한 설명,

e. 다음을 제공하면서 단체의 성공을 설명하는 보고서의 기준이 포함된 지역 문화 단체의 공공혜택 보고 체제:

(1) 단체의 이전 보고서에서 예상된 일반 공공혜택,

(2) 형평성 및 지리적 요소가 포함된 공공혜택으로 단체의 이전 보고서에서 예상된 형평성 및 포함된 결과 달성을 향해 발전을 이룩함,

(3) 단체가 다음 해에 제공하기 위해 계획하는 일반 공공혜택, 형평성 및 지리적 요소가 포함된 공공혜택과 형평성 및 포함된 결과 미리 보기,

f. 단체의 이전 보고서에 예상된 대로 공립학교 교육 활동에서 참여도를 설명하면서 지역 문화 단체가 사용하기 위한 공립학교 접근 보고 체제 및 다음 해에 제공할 계획인 공립학교 교육 프로그램 미리 보기,

g. 각 카운티 의회 의원을 통해 각 한 번씩 추천을 받는 최소 아홉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적격 패널을 통한 검토를 비롯해 지역 문화 단체 접근 프로그램에 사용되어 단체가 프로그램에 적격하기를 확인하기 위한 초기 신청 절차 설명 및,

h. RCW 36.160장 및 본 조례에 따라 상을 부여하면서 투명성, 책임성과 규정준수를 보증하기 위해 매년 상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 및 계약, 지급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설명.

5. 지역 기반 단체 접근 프로그램 설명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새 문화 단체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 센터 개발 및 종자돈을 포함한 모든 운영 프로그램, 프로젝트, 자본, 이니셔티브 및 기타 자금 제공 풀을 위한 Accesss for All 프로그램의 해당 부분 내에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단체 접근 프로그램과 자금 할당에 대한 전체 개요, 형평성이 포함된 공공혜택 또는 모두를 제공하는 기준 설명,

b. 자격이 부여된 지역사회에 기반한 단체에 자금을 수여하기 위한 기준에는 비면제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단체 또는 자격이 부여된 비전통적/사회적 봉사와

## 조례제18513호전문

문화 기관 혹은 둘 다 포함되며, 매년 최소한 백만 달러를 지출하는 각 지역의 문화 프로그램과 단체에 자금을 조성할 정의된 문화 프로젝트 기금으로, 지역사회가 만든, 지역사회로 구성된,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문화유산 단체와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단체를 위한 상급 기준 설명 그리고 인구 조사 지역에서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중요한 공평이 포함된 공공 혜택을 부여하거나 둘 다 제공한다;

c. RCW 36.160장에 따라 투명성, 책임성 및 규정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단체의 운영, 프로젝트, 자본 및 장비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경쟁적인 과정 수행 절차,

d.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단체를 통한 폭넓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단체 접근 프로그램의 전국적인 기술 지원 및 커뮤니케이션 계획 설명,

e.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단체 연례 신청서, 패널 및 승인 과정 설명, 해당 프로그램에서 신청인 지역사회에 기반한 단체에 지워진 부담을 최소화하고 매년 지속하는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설계,

f.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단체 보조금을 위한 계약 및 지급 과정 설명, B.1. 하위 부분에 설명된 전국적인 문화 형평성 계획 및 네 개의 하위지역 계획. 본 계획은 비전을 설명하고 목표를 확립하며 우선순위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해당 문화 접근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제공합니다.

2. 전국 문화 형평성 계획은 지역 문화 단체,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단체, 학교의 의견을 통해 개발되며 4Culture 자문 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형평성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조언을 제공하고 감시하며 감독권을 제공합니다.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공립학교 접근 수익금을 확대하여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거나 절감된 가격에 제공하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상대 비율을 일치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권장사항,

b. 지역 문화 단체가 본 조례의 4.B 부분에 설명된 형평성 및 포함된 결과에 기여하는 형평성이 포함된 공공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장사항,

c. 접근 가능한 문화 및 경제 장애물에 직면하는 지역사회 및 인구 조사 표준 지역을 통해 및 이를 위해 단체인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단체에 대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단체 예산의 최대 삼십 퍼센트까지 상을 주는 것으로 상당한 형평성이 포함된 공공혜택 또는 모두를 제공하는 기준 설명.

3. 네 개의 카운티 하위지역인 북쪽, 교외 동쪽, 시골 동쪽(인접한 도시 성장 경계 지점의 동쪽) 및 남쪽에 대한 문화 기회 및 접근 확장 계획은 실행 계획에 추가 정의되며 문화 단체, 도시, 공립 학교 및 하위지역을 대표하는 카운티 의회 의원의 의견을 통해 개발됩니다. 각 하위지역 계획에는 다음을 위한 전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통합되지 않은 영역 내를 포함해 각 하위지역 내 여러 문화 센터 개발,

b. 종잣돈을 사용해 새 문화 단체 수립;

c. 2021년에 제공 될 미래 호텔-모텔 세금과, 민간 기부금, 보조금 등 다른 기금 출처와 함께 Access for All 기금을 활용하여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합니다. 호텔-모텔 세금은 Access for All 외에도 다른 수령자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4. 4Culture에서는 해당 계획을 사용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형평성 및 지리적 요소가 포함된 공공혜택에 사용되는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 의무를 개발하면서 지역 문화 단체를 통해 업무를 안내,

b. 지역 문화 단체와의 파트너십, 4Culture를 통해 집행되는 직접적인 기부, 및 현금 지원과 기술 전문 지식 기부를 통한 성장 등을 조성하는 데 참여하는 방법을 비롯해 시애틀(Seattle) 시 외곽에서 문화 센터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회 식별

c.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단체 접근 프로그램 수익 분배를 위한 경쟁적인 과정을 위해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확립하도록 안내.

5. 이를 승인하는 동의와 더불어 본 절의 하위 부분 B.2. 및 B.3의 계획은 실행 계획에서 식별된 완료일까지 4Culture와 협의하여 임원을 통해 의회에 전송해야 하며 이는 동의를 통한 승인 시 유효합니다.

C. 자금을 받기 위해 전도유망한 지역 문화 단체 또는 전도유망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단체의 적합성을 판별하고 어떠한 단체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는 자금의 액수를 설정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해 보이는 프로그램으로서 RCW 36.160장에 따라 추가된 모든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

D. 수익 징수 변동사항이 할당 과정, 문화 단체 적합성 및 보고 요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제안 정책,

E. 4Culture 자문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형평성

및 포함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조언을 제공하고 감시하며 감독권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자문위원회의 크기 및 운영이 정의되며 이 위원회에서 최소 아홉 명의 회원은 각 아홉 명의 카운티 의회 의원을 통해 한 번씩 추천을 받아야 하고 킹카운티 위원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F. 4Culture 및 카운티 간에 제안된 연례 보고 체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의회 지역의 분석 자료를 포함한 수익 분배 관련 회계 보고서,  
2. 카운티 의회 지역의 분석 자료를 포함해 Access for All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받은 인원수에 대한 보고서,  
3. 단체의 이전 연례 보고서에 예상된 대로 식별 가능한 공공혜택을 제공하면서 자금 지원을 받은 각 문화 단체의 성공 관련 성과 보고서,  
4. 다음 해에 제공하며 자금 지원을 받는 각 지역 문화 단체의 공공혜택에 대한 미리 보기 보고서,

5. 단체의 이전 연례 보고서에 예상된 대로 공립 학교 문화 접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금 지원을 받는 각 지역 문화 단체에 대한 성과 보고서 및 다음 해에 공립 학교 문화 접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계획된 자금 지원을 받는 각 지역 문화 단체에 대한 미리 보기,

6. 자금 지원을 받는 각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 단체의 식별 가능한 공공혜택에 대한 성과 보고서

7. 프로그램 패널 과정, 적합성 가이드라인 또는 보고 요건에 대한 제안 변경사항을 식별하는 관리 보고서.

10절 수정된 조례 14482, 7절 및 K.C.C. 2.49.060는 다음과 같이 읽도록 각각 수정되었습니다.

((조례14482)) 본 조례의 첨부문서 A에 명시된 대로 문화 발전 부서 헌장은 이에 의하여 승인됩니다. 위원회 서기는 ((2002년 10월 11일)) 본 조례의 발효일 10일 이내에 중복 원본의 헌장을 발행하며 보증된 카운티 직인을 각각 갖게 됩니다. 위원회 서기는 원본 헌장 한 부를 기록 및 면허 서비스국에 보관 및 기록하며 문화 발전 부서를 대표해 카운티 임원에게 원본 헌장 한 부를 제공합니다. 카운티에서는 공정한 후 이사들이 증언을 듣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헌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1절 승인 카운티 의회 지역구 서기가 2017년 8월 1일 선거 이전에 해당 법률에 따라 당국과 일관된 기타 조치와 본 조례의 유효일 이전에 선거 위원회 이사에게 보낸 발의안의 인증 문제는 이에 의하여 승인 및 확인되었습니다.

12절 분리 가능성 본 조례의 조항이나 대상에 대한 적용 또는

정황이 무효한 경우 본 조례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 대상이나 정황에 대한 본 조항의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조례 18513은 2017년 4월 17일에 제출되었고 2017년 5월 1일에 킹카운티 대도시권 의회에 의한 다음 표결을 통해 수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예: 7 - Mr. von Reichbauer, Ms. Lambert, Mr. Dunn, Mr. McDermott, Mr. Dembowsky, Ms. Kohl-Welles 및 Ms. Balducci

아니오: 2 - Mr. Gossett 및 Mr. Upthegrove

면제: 0